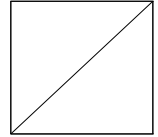
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1 호	심 의 사 향
심 의 연 월 일	2021. 3. 31. (제 28 회)	

## 2021년도 연구개발 제도개선 기본지침(안)

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
심의회 운영위원회

제 출 자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
제출 연월일	2021. 3. 31.



## 1. 의결주문

- 「2021년도 연구개발 제도개선 기본지침(안)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

## 2. 제안이유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9조 제1항에 따라,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인 「2021년도 연구개발 제도개선 기본지침(안)」을 마련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현장중심 연구제도 개선절차의 의의

- 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수요에 기반한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(이하 “연구제도”) 개선 추진
- ② 연구현장의 혼란 경감을 위해 각 부처 연구제도의 일관성 제고
- ③ 연구제도 개선 사항의 현장체감 촉진을 위해 법령 개정뿐 아니라 현장 적용 성과를 점검

### 나. 2021년도 연구제도 개선절차

◆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의 제도개선 수요를 수렴하여 2021년도 연구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, 현장 적용 성과까지 점검

#### ① 기본지침 마련 (현장규제점검단·과기정통부, '21.3월)

- 산·학·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규제점검단에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제안한 개선과제를 기반으로 제도개선 기본방향의 주요내용 검토

**② 제도개선 의견제출 (관계부처('21.4월), 연구현장('21.4월 ~ 5월))**

- 연구현장, 부처(전문기관) 등은 기본지침을 고려한 '제도개선 의견 제출서'를 작성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제안

※ 기본지침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도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에서 제안하는 제도 개선 과제 및 개선방안 적극 반영

**③ 연구제도 개선안 검토·수립 (과기정통부, '21.5월 ~ 8월)**

- '제도개선 의견 제출서'를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고,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제도개선안(과기자문회의 심의) 수립·통보

**④ 연구제도 개선 (관계부처, '21.9월 ~ 12월)**

- '21년도 연구제도 개선안에 따라 부처별로 소관 법령 및 행정 규칙을 개정하고, 관련 시스템에 반영

**⑤ 현장체감 자체점검 (연구기관, '22년 중순)**

- 수요가 있는 연구기관별로 '21년도 제도개선의 체감도를 자체 점검하고, 점검 결과를 '22년 제도개선 의견 제출 시 포함

**다. 2021년도 연구개발 제도개선 기본방향**

**① 「연구개발혁신법」의 성공적인 안착**

- (R&D규정 정비)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「연구개발혁신법」에 맞게 부처별로 소관 R&D 법령·행정규칙의 제·개정 완료('21년)

- (신설제도 이행기준) 「연구개발혁신법」에 따라 신설된 제도\*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

\* 특별평가, 연구지원기준, 정부납부 경상기술료, 제재처분 재검토 절차 등

- (현장체감 점검) 제도개선이 현장에 실제로 안착될 수 있도록 「연구개발혁신법」에 따라 개선된 제도의 현장체감 점검

-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 연구비 제도의 현장 체감도를 점검하고,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의 연구지원역량 조사

## ② 정책적 현안에 대한 신속한 제도적 지원

- (R&D수행 기업 지원) 코로나19, 소부장, 탄소중립 등 관련 R&D 수행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비 부담완화 등 지원
- (연구개발비 부담기준 현실화) 정부지원\* 분야와 민간투자\*\* 촉진 분야의 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을 차등화하고, 초기 중견기업 (매출액 3천억원 미만)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수준의 부담기준 적용  
\* 기초연구, 원천기술개발 등 / \*\* 응용·사업화기술개발 등
- (혁신·도전형 R&D 제도적 지원) 성과·목표 지향적R&D\*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선정·평가·정산·제재 절차를 「연구개발혁신법」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적용  
\* 경쟁형R&D, 후불형R&D 등의 혁신·도전형 사업군

## ③-1. 혁신적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지원 제도의 혁신(연구현장 기 제안 사항)

### ① 역량있는 연구자·기업의 정부R&D 참여 활성화

-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기준(약칭 3책5공)의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, 재무여건은 어려우나 역량있는 기업의 정부R&D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

### ② 신진연구자 지원 강화

- 역량 있는 박사후연구자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과제 참여, 인건비 지급 등 여건을 개선하고, 학생인건비 지급규모 확대 및 안정성 제고 추진

### ③ 연구수행의 자율성·유연성 제고

- (연구비) 논문게재료, SW사용료 등 과제 종료 이후 소요되는 일부 연구비 항목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
\* (현행) 학생인건비, 시설·장비비에 제한적으로 적용 中
- (연구노트) 자율적 연구노트 문화 조성을 위해 연구노트에 대한 행정적 요구를 지양하고, 작성·관리에 관한 자율성 강화

#### ④ 국가-지역 R&D정보 연계 강화

- 국가R&D 정보와 지역R&D 정보간 상호연계를 위해 NTIS 내에 지역과학기술정보서비스(RTIS) 구축

### ③-2. 성과의 시장 거래 촉진을 위한 성과활용 제도개선(연구현장 기 제안 사항)

#### ① 시장에서의 기술거래 촉진

- (기술실시 자율성 확대) 기술실시가 기업의 수요에 적합하도록, 대학·공공(연) 소유 기술의 실시\*에 관한 자율성 확대  
\* 현재는 통상 실시가 원칙
- (미활용 특허 활용 촉진) 연구기관의 미활용 특허 포기에 따라 성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연구자·기업에 양도하기 위한 세부 절차 마련
- (기술료 지불방식 확대)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, 기업이 연구기관에 지불하는 기술료의 유형을 주식 등으로 다변화

#### ② 연구기관의 성과활용 역량 강화

- (기술료 배분구조 개선) 기술료 수입이 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선순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료 수입 배분구조 개선  
※ (현행) 연구자보상 50% 이상, 권리화기술이전사업화 비용 15% 이상, 기술이전기여자 보상 10% 이상
- (성과활용 역량강화 유도) 연구기관의 자체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지원체계평가에 성과활용과 관련된 지표 신설

### ④ 부처·연구현장 수요 중심의 제도개선 추진

-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에서 제안하는 과제로서 연구현장의 개선 수요가 높은 과제 적극 개선 추진

---

# 2021년도 연구개발 제도개선 기본지침(안)

---

2021. 3.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# 목 차

I. 현장중심 연구제도 개선절차의 의의 및 근거 .....	1
II. '21년도 연구제도 개선절차 운영 경과 및 계획 .....	2
III. 「제도개선 의견 제출서」 검토방향 .....	4
IV. '21년도 제도개선 기본방향 .....	5
1. 「연구개발혁신법」의 성공적인 안착 .....	6
2. 정책적 현안에 대한 신속한 제도적 지원 .....	7
3. 혁신적 성과의 창출 및 활용 촉진(연구현장 기 제안 사항) 8	
3-1. 혁신적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지원 제도의 혁신 .....	8
3-2. 성과의 시장 거래 촉진을 위한 성과활용 제도개선 .....	10
4. 부처·연구현장 수요 중심의 제도개선 추진 .....	11
참고1. 제 1·2기 현장규제 점검단 운영 개요 ·	12
참고2. 現 정부의 R&D제도개선 성과 .....	13



# I. 현장중심 연구제도 개선절차의 의의 및 근거

## 1 의 의

- 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수요에 기반한 국가연구 개발행정제도\*(이하 “연구제도”) 개선 추진
  - \*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및 그 하위규정, 각 부처의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·시책 등을 포괄하는 의미
- ② 연구현장의 혼란 경감을 위해 각 부처 연구제도의 일관성 제고
- ③ 연구제도 개선 사항의 현장체감 촉진을 위해 법령 개정뿐 아니라 현장 적용 성과를 점검
  - ※ 그간 정부의 제도개선안 발표와 부처별 규정 개정의 내용·시점에 차이가 발생하고, 현장에서는 규정에 근거없는 불합리한 관행 등이 잔존

## 2 운영 근거 : 「연구개발혁신법」 제28조~제30조

- (법 제28조) 정부는 매년 이해관계인·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, 누구든지 연구제도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음
- (법 제29조) 연구제도 개선의 체계화된 절차 마련
  - (제1항) 과기정통부는 당해년도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수립(과기자문회의 심의)하고 3월31일까지 관계부처에 통보
  - (제2항) 연구기관 또는 정부부처는 기본지침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을 과기정통부에 4월30일까지 제출
  - (제3항) 과기정통부에서는 제도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안을 수립(과기자문회의 심의)하고 8월31일까지 관계부처에 통보
  - (제4항) 제도 개선사항이 다음연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소관규정 및 각종 시책에 반영
- (법 제30조) 연구기관이 운영하는 내부규정과 이에 근거한 활동에 대해 정부에서 개선 권고(과기자문회의 심의)하고, 이행 실태 확인·점검

## Ⅱ. '21년도 연구제도 개선절차 운영경과 및 향후계획

### 1 기본지침 마련 (현장규제점검단(산·학·연 전문가)·과기정통부, '21.3월)

- (제 1기) 현장방문(35개 기관)을 통해 발굴한 현장규제 中 시급성·타당성 등에 따른 단기 개선과제\*를 개선하고, 중·장기 개선과제 제안('19.7월~'20.3월)  
\* 「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」('20.5월)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
- (제 2기) 제1기 현장규제점검단이 제안한 중·장기과제를 심층 검토하고, 연구현장의 현안과 관련된 추가 개선 의제 발굴('20.9월~'21.2월)

☞ 현장규제점검단·과기정통부가 함께 제도개선 기본방향 검토

#### < '22년 이후 기본지침 마련 방식 >

- (가칭)'연구제도개선위원회\*'를 운영(전년도 9월~해당년도 3월)하여 연구현장의 제도개선 수요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을 검토  
\* 과학기술·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산·학·연 민간전문가로 구성

### 2 제도개선 의견제출 (관계부처('21.4월), 연구현장('21.4월 ~ 5월))

- 연구현장, 부처(전문기관) 등은 기본지침을 고려한 '제도개선 의견제출서(붙임)'를 작성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제안
  - 기본지침에 제시된 기본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제안
- 기본지침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도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에서 제안하는 제도개선 과제 및 개선방안 적극 반영

#### < 상시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 >

- 온라인 소통창구(익명제안 원칙)를 통해 현장의 제도개선 의견을 상시적으로 접수 ※ 「연구개발혁신법」 해석 문의 창구와 별도 운영
- 연구현장의 공감도, 시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, 제도개선안에 반영

### ③ 연구제도개선안 검토·수립 (과기정통부, '21.5월 ~ 8월)

- '제도개선 의견 제출서'를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고,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제도개선안(과기자문회의 심의) 수립·통보
- 연구현장, 부처 등에서 제안한 과제에 대해 검토한 결과, 중·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'22년도 이후 제도개선안에 반영

### ④ 연구개발 제도개선 (관계부처, '21.9월 ~ 12월)

- '21년도 연구제도 개선안에 따라 부처별로 소관 법령 및 행정 규칙을 개정하고, 관련 시스템에 반영

### ⑤ 현장체감 자체점검 (연구기관, '22년 중순)

- 수요가 있는 연구기관별로 '21년도 제도개선의 체감도를 자체 점검
  - 자체점검 수요가 있는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에서 '현장 체감 체크리스트'\* 및 점검 방식\*\*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
    - \* 현장체감 점검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목록, 제도개선 사항별 취지·내용 등
    - \*\* 연구기관별로 연구자, 연구지원인력 등으로 균형 있게 구성된 '현장체감 검토 위원회'를 운영함으로써 제도개선의 체감 여부를 토의하는 방식 권고
  - 연구기관에서 '22년 제도개선 의견제출 시, 연구기관별로 자체 점검한 현장체감 의견을 포함하여 제출

◆ **현장 중심** 제도개선체계의 **지속가능성**을 위해 상기 연구개발 제도개선 절차를 **매년 정례적으로** 운영할 예정

### Ⅲ. 「제도개선 의견 제출서」 검토방향

#### ① 「연구개발혁신법」의 조기 안착을 위한 제안

- 「연구개발혁신법」에 따라 신설되거나 개선된 제도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 및 기준에 관한 제안
- 「연구개발혁신법」과 부합하지 않는 부처별 R&D규정, 전문기관의 업무 관행, 연구기관별 내부규정·관행에 대한 개선의견

#### ② 정책적 중요성·시급성이 있는 제안

- 코로나19, 소부장, 탄소중립, BIG3, AI, 혁신·도전형 R&D사업 등 주요 현안과 관련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제안

#### ③ 관계부처·연구현장에서 개선 수요가 있는 제안

- 범부처적인 적용이 필요하거나, 다양한 유형의 연구분야 및 연구기관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개선 제안
- 부처별·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기준 적용이 필요한 사항 제안
- 창의적·도전적 연구수행을 저해하거나, 창출된 성과의 활용을 저해하는 연구제도의 규제 요인에 대한 개선 의견

#### ④ 구체적인 제안

- 제도개선 제안의 이행을 위한 구체성에 대하여 검토

## IV. '21년도 제도개선 기본방향

### 목표

### 현장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R&D 제도 마련

### 추진 방향

#### ① 「연구개발혁신법」의 성공적인 안착

-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R&D규정 정비
- 신설된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세부기준·절차 마련
- 제도개선의 현장 안착을 위해 현장체감 점검

#### ② 정책적 현안에 대한 신속한 제도적 지원

- 주요 정책현안 관련 R&D수행기업 지원
- 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현실화
- 혁신·도전형 R&D의 제도적 기반 조성

#### ③ 혁신적 성과 창출·활용 촉진(연구현장 기 제안 사항)

##### ③-1. 혁신적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지원 제도의 혁신

- 역량있는 연구자·기업의 정부R&D 참여 활성화
- 신진연구자 지원 강화
- 연구수행의 자율성·유연성 제고
- 국가-지역 R&D정보 연계 강화

##### ③-2. 성과의 시장 거래 촉진을 위한 성과활용 제도개선

- 시장에서의 기술거래 촉진
- 연구기관의 성과활용 역량 강화

#### ④ 부처·연구현장 수요 중심의 제도개선 추진

## ①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R&D규정 정비

- 「연구개발혁신법」에 맞게 부처별로 소관 R&D 법령·행정규칙의 제·개정 완료('21년)
  - 부처별 상이한 용어(협동과제, 세부과제 등)·절차·기준, 혁신법에 비해 과도한 제한, 혁신법 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 등을 중점적으로 개정

## ② 신설된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세부기준·절차 마련

- **(특별평가)** 환경변화 등에 따른 연구과제의 정당한 중단 및 변경을 위해 신설된 절차인 특별평가에 관한 세부 기준·절차 마련
- **(연구지원기준)** 연구기관의 지원역량 강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요소별 연구기관의 역할·업무표준을 갖춘 「연구지원 기준」 제공
- **(정부납부 경상기술료)** 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경상기술료의 적정한 산정을 위한 수익, 기술기여도 등에 관한 정의 및 기준 안내
- **(제재처분 재검토)**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안착을 위해 내부운영 규정 및 제재처분 상세 양형기준 마련

## ③ 제도개선의 현장 안착을 위해 현장체감 점검

- **(연구비 제도)** 사용계획서 작성·변경 간소화, 사용기준 완화 등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 연구비 제도에 대한 부처 이행현황과 현장 체감 점검
- **(전문기관 역량제고)** 전문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전문기관별 R&D 사업지원 역량 제고를 위한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우수사례 확산
- **(연구기관 행정개선)** 연구기관의 실제 연구행정 근거인 내부규정 및 관행(연구개발활동)을 지속 점검·개선

## 2

## 정책적 현안에 대한 신속한 제도적 지원

### 1 주요 정책현안(코로나19, 소부장, 탄소중립 등) 관련 R&D수행기업 지원

-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, 소부장·탄소중립 R&D를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부담 완화 등 지원

#### < (현행) 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>

구분	연구개발비 부담	현금부담
		대기업
중견기업	30%이상	13% 이상
중소기업 (수요·공급)	25%이상	10% 이상

### 2 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현실화

- **(유형별 차등화)** 정부지원 분야(기초연구, 원천기술개발 등)와 민간투자 촉진 분야(응용·사업화기술개발 등)의 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을 차등화
- **(초기 중견기업 지원)** 초기 중견기업(매출액 3천억원 미만)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정부R&D 연구개발비 부담기준(25% 이상)을 적용

### 3 혁신·도전형 R&D의 제도적 기반 조성

- 성과·목표 지향적R&D\*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선정·평가·정산·제재 절차를 「연구개발혁신법」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적용

\* 경쟁형R&D, 후불형R&D 등의 혁신도전형 사업군

#### < 유연한 적용의 예시 >

- (예시1) 과제에 적합한 우수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등 공모 외 방법으로 과제 및 연구자를 선정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
- (예시2) 연구개발비의 지급 시기를 폭넓게 해석하여 연구기관이 우선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결과에 따라 연구비를 정산·지급하는 방식을 허용

## 1. 혁신적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지원 제도의 혁신

### ① 역량있는 연구자·기업의 정부R&D 참여 활성화

- **(연구자)** 정부R&D 규모 증가, IRIS 구축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기준(약칭 3책5공)의 완화 방안 검토

#### 제1기 현장규제점검단

- 과제 규모, 연구실 규모와 관계없이 3책5공과 같은 일률적인 기준으로 과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의욕 있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뼈아픈 규제

- **(기업)** 재무여건은 어려우나,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의 정부 R&D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

#### 제2기 현장규제점검단

- 창업초기 기업들은 현금흐름이 원활해지기까지 3~5년, 많게는 7년 이상 걸려 부채비율만으로는 부실위험을 판별하기에 한계

### ② 신진연구자 지원 강화

- **(박사후연구자)** 역량 있는 박사후연구자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과제 참여, 인건비 지급 등 여건 개선

#### 현장의 목소리

- 연구실의 과제가 단절된 경우에도 박사후연구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박사후연구자에 대해서도 학생연구원과 같이 인건비 통합관리제를 적용할 필요

- **(학생연구원)** 학생연구원 처우개선을 위해 학생인건비 지급규모 확대 및 안정성 제고 추진

- 학생연구원에 대한 산재보험료 계상 인정 등 연구자로서의 권익 보호

※ 학생연구원 등을 산재보험 의무가입자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(20.11월)



### ③ 연구수행의 자율성·유연성 제고

- **(연구비)** 논문게재료, SW사용료 등 과제 종료 이후 소요되는 일부 연구비 항목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

\* (현행) 학생인건비, 연구시설·장비비에 제한적으로 적용 中

#### 현장의 목소리

- 인문·사회 분야에서는 과제 종료 후 2년 동안 논문게재료 집행을 허용하고 있음

- **(연구노트)** 자율적 연구노트 문화 조성을 위해 연구노트에 대한 행정적 요구를 지양하고, 작성·관리에 관한 자율성 강화

#### 현장의 목소리

- 현장에서는 전문기관 제출을 위한 '형식적 연구노트'외에도 중요 연구데이터 및 기업영업 비밀 등을 기록하는 '실질적 연구노트'를 따로 작성하는 관행 존재
- 인문·사회 분야는 대부분의 경우 연구노트 작성이 불필요

- 연구노트에 대한 인식을 연구과정 평가, 연구부정 검증 등에 따른 제재로부터 연구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선 유도

#### 제2기 현장규제점검단

- 연구노트가 규제가 아닌 구제로 활용되도록 인식변화 필요

### ④ 국가-지역 R&D정보 연계 강화

- **(국비 매칭사업)** 국가R&D 정보와 지역R&D(국비매칭) 정보간 상호 연계 강화를 위해 NTIS 내에 지역과학기술정보서비스(RTIS) 구축

\* 광역협력권산업육성사업의 총 249개 과제 中 132개(53%) 과제가 지자체 재원으로만 지원되고 있으며, NTIS 정보 수집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('19년 기준)

- **(지자체 별도사업)** 국비의 매칭 없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과제 정보도 NTIS를 통해 수집·제공하는 방안 검토

#### 제2기 현장규제점검단

- 지역주도형 R&D 트랙으로 운영되는 과제가 일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대상에서 누락됨에 따라 지역R&D 정책 등 정책수립 시 정확한 지역R&D 투자현황 집계에 한계

## 2. 성과의 시장 거래 촉진을 위한 성과활용 제도개선

### 1. 시장에서의 기술거래 촉진

- **(기술실시 자율성 확대)** 기술실시가 기업의 수요에 적합하도록, 대학·공공(연) 소유 기술의 실시\*에 관한 자율성 확대

\* 현재는 통상 실시가 원칙

#### 현장의 목소리

- 산업특성 상 전용실시가 필요한 분야의 경우 통상실시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적어,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양도, 전용실시, 통상실시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게 효율적일 것임

- **(미활용 특허 활용 촉진)** 연구기관의 미활용 특허 포기에 따라 성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연구자·기업에 양도하기 위한 세부 절차 마련

#### 제2기 현장규제점검단

- 대학에서 벌크핀펫 발명의 미국출원을 포기하자, 발명자가 이를 양도받아 직접 인텔(12년, 100억원), 애플(19년, 수백억원), 삼성전자(20년, 2230억원)로부터 거액의 경제적 성과 창출

- **(기술료 지불방식 확대)**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, 기업이 연구기관에 지불하는 기술료의 유형을 주식 등으로 다변화

### 2. 연구기관의 성과활용 역량 강화

- **(기술료 배분구조 개선)** 기술료 수입이 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선순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료 수입 배분구조 개선

※ (현행) 연구자보상 50% 이상, 권리화기술이전사업화 비용 15% 이상, 기술이전기여자 보상 10% 이상

#### 현장의 목소리

- 각 대학 및 출연(연)별로 운영 철학 및 상황이 다양함에도 정부에서 일률적인 기준으로 사용비율을 정하고 있어, 이를 못 지키게 되는 경우가 빈번

- **(성과활용 역량강화 유도)** 연구기관의 자체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지원체계평가에 성과활용과 관련된 지표 신설

-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에서 제안하는 과제로서 연구현장의 개선 수요가 높은 과제 적극 개선 추진

**1 제1기 현장규제 점검단(`19.7월 ~ `20.3월)**

- **(구성)** 총 30명으로 대학, 출연(연), 기업 3개 분과로 구성  
 ※ 분과별로 분과장 1명, 위원 9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
- **(운영)**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 등을 통해 규제를 발굴하고, 위원별로 발굴된 규제를 정리하여 규제개선 제안서 작성·제출
- **(활동내용)** 점검단과 혁신본부 합동으로 총 35개 연구현장\*을 방문하여 인터뷰 등을 통해 총 500여건의 규제의견을 발굴(`19.7~8월)  
 \* 총 35개 기관 방문 : 9개 대학, 9개 출연(연), 17개 기업  
 - 타당성·시급성, 파급효과, 제안빈도 수 등을 고려하여 21개 단기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개선방안 마련  
 ※ 중장기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제2기 현장규제 점검단에서 검토 추진
- ☞ **(주요 규제개선) 연구비 선집행 허용, 출연(연) 국내출장 운임비 실비 정산 폐지, 학생연구원 인건비 학기별 집행 허용 등**

**2 제2기 현장규제 점검단(`20.9월 ~ `21.2월)**

- **(구성)** 과제별로 전문성을 갖춘 전담위원 총 9명으로 구성
- **(운영)** 민간전문가의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자율적 활동을 지원하고,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제 정책에 반영
- **(활동내용)** 제1기 현장규제 점검단에서 제시한 중·장기 과제, 자체적으로 발굴·제안한 과제 등 총 8개 과제에 대해 심층 검토
- ☞ 과기정통부와 합동으로 '21년도 제도개선 기본지침(안) 주요내용 마련

**< 제도개선 추진단 과제(안) >**

①	3책5공 및 참여율 기준 개선	②	기업 부실위험 검토기준 완화
③	성과소유 원칙 개선 방안	④	특허 출원·등록료 확보 방안
⑤	제재처분 상세기준 마련	⑥	연구노트 문화 활성화
⑦	제도에 대한 연구현장 이해도 제고	⑧	국가/지역R&D 시스템 연계 방안

## 1. 연구행정 부담 감소를 위한 R&D제도 및 시스템 마련

- **(단일법령체계 마련)** 국가R&D 사업에 있어서 타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「연구개발혁신법」 중심의 단일법령체계 마련(21.1월~)
- **(범부처 협력체계 구축)**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행력을 갖기 위한 체계\* 마련(21.3월~)
  - \* (매년 4월) 기본지침 마련 ⇒ (매년 8월) 제도개선안 마련 ⇒ (매년 12월) 이행 점검
- **(단일 시스템 구축)** 부처별 연구비관리시스템을 2개로 통합(19.9월)하고, 범부처 연구자정보시스템(20.12월) 및 통합연구지원시스템(21.8월) 마련

## 2. 연구수행의 자율성 강화 및 행정 부담 경감

### ① 신뢰에 기반하여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

- **(사용계획의 간소화)** 연구비 사용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사용계획 작성을 간소화하고, 사용계획 변경의 자율성을 확대

- (19년) 연구활동비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내역 작성 폐지(공동관리규정)
- (20년) 논문게재료는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집행 인정(표준매뉴얼)
- (21년) 연구비계획서에는 수량×단가 등 세세한 사용내역을 작성하는 대신 총액만 작성하도록 하고, 사용계획은 자유롭게 변경 허용(혁신법, 연구비 고시)

- **(연구비 사용시점 유연화)** 연구비 사용의 적시성을 위해 연구단계 내에서의 연구비를 자동 이월하고 협약 체결 전의 연구비 선집행 허용

- (19년) 일부 사업에서 연구비 이월 허용(공동관리규정)
- (20년) 협약 체결 전에도 연구비를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 안내(표준매뉴얼)
- (21년) 연차정산 폐지에 따라 모든 사업에서 연구비 이월 허용(혁신법), 협약 체결 전 연구비 우선집행 근거 마련(연구비 고시)

- **(연구비 사용범위 확대)** 연구비를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, 효율적 사용을 위한 통합구매·관리 허용
- SW라이선스료 전체비용 인정, 통합구매 허용 등 집행 자율성 확대

- (20년) SW라이선스료 전체비용 인정 및 기관단위 통합구매 허용(표준매뉴얼)
- (21년) SW라이선스료 전체비용 인정 및 기관단위 통합구매 허용(연구비 고시),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사용실적 보고 전까지는 SW이용료 사용 허용(연구비 고시)

- 연구장비 통합관리제 신설 등 연구시설·장비비 사용 효율성 강화

- (19년) 연구장비 통합관리제 신설(공동관리규정)
- (20년) 연구시설 장비비 이용료 사용범위 확대(연구시설장비매뉴얼)

- **(증빙부담 완화)** 종이영수증 보관 부담 완화, 회의비 증빙 간소화, 출연연 출장비 실비정산 폐지 등 증빙부담 완화

- (19년) 전자문서 형태의 영수증 보관·제출 인정(공동관리규정)
- (20년) 10만원 이하 회의비 증빙 간소화(표준매뉴얼), 출연(연) 국내출장 운임비 실비정산 폐지(공문 안내), 전자문서 형태의 모든 증명문서 보관·제출 인정(표준매뉴얼)
- (21년) 출연(연) 국내출장 운임비 실비정산 폐지(연구회 자체 시스템 구축), 전자문서 형태의 모든 증명문서 보관·제출 인정(연구비 고시),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문서의 불필요한 출력 요구 금지(연구비 고시)

## 2 협약 기간 확대 및 절차 간소화

- **(연차협약 폐지)** 다년도 협약을 통해 중·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제를 관리하고, 연 단위로 이루어지던 과도한 정산·평가 부담을 완화

- (19년) 다년도 협약을 최초로 규정하였으며 일부 부처에서만 적용(공동관리규정)
- (21년)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대상으로 협약하도록 의무화하고 범부처 적용(혁신법)

- **(협약변경 절차 간소화)** 연구비 사용계획, 참여연구자, 연구수행 방법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연구기관 자율로 협약을 변경('21년)

### ③ 과제 신청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참여 규제 완화

- **(예고제도 신설)** 예측하기 힘든 과제 공모 일정이 부실한 팀 구성과 연구계획을 양산하지 않도록, 공모 일정을 연 초에 일괄 예고('21)
- **(3책5공 완화)** 과제의 특성, 연구자의 상황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3책5공 예외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

• ('19년) 4개월 내 종료과제는 제외 ⇒ 6개월 내 종료과제는 제외(공동관리규정)  
• ('21년) 3책5공을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준수 의무사항에서 정부의 연구자 선정 단계에서의 재량사항으로 변경하고 예외 과제를 확대(혁신법)

- **(중복성 검토 완화)** 창의적 주제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연구주제·목표·수행방식 등에 차별성이 있는 경우 선정 허용  
※ ('19년) 공동관리규정에 반영 ⇒ ('21년) 연구개발혁신법에 반영

### ④ 도전적 연구 장려 및 평가 효율성 강화

- **(자발적 중단 허용)** 기술·시장의 환경 변화로 연구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중단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한 특별평가 절차 신설  
※ (특별평가의 요건)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 등
- **(성실수행 적극 인정)** 연구수행 결과와 연구수행 과정이 모두 극히 불량한 경우를 제재사유로 한정하여 도전적 연구 장려
- **(평가위원 제척기준 완화)** 평가단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인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제척기준을 완화

• ('20년) 비영리기관의 경우에 평가위원 제척 기준을 '동일 기관 소속'에서 '동일 부서 소속'으로 완화(공동관리규정)  
• ('21년) 평가위원 제척기준에서 '사제관계 제외' 폐지(혁신법)

- **(최종보고서 부담 완화)** 현장의 보고서 작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종보고서 작성 시한을 기존 '45일'에서 '2개월'로 연장

### 3. 민간 기업의 R&D투자부담 완화

- **(정부납부 정액기술료 폐지)** 기업이 출연금 규모에 따라 정률로 납부하던 정액기술료를 매출액 기준의 경상기술료로 전면 전환('21~)

정액기술료	경상기술료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출연금을 기준으로 중소 10%, 중견 20%, 대기업 40%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 5%, 중견 10%, 대기업 20%</li> </ul>

- **(매칭부담 완화)** 코로나19, 일본의 수출규제 등 환경변화에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R&D 매칭 부담금 일시적 완화

### 4. 신진연구자 및 학생연구원 처우 개선

- **(박사 후 연구자 근로계약 체결)** 박사 후 연구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('19~)
- **(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)**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개선·확산

- ('19년)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과제별 참여율 기준으로 지급하던 방식을 총액 지급 방식으로 개선하고, 기관단위 통합관리제 신설(공동관리규정)
- ('20년) 학기별 일괄 선지급 허용, 학위과정 간 지급 허용(학생인건비 지침)
- ('21년) 학생인건비 지원기준 준수기관을 통합관리기관에서 전체 대학으로 확대하고, 학생인건비에 더하여 BK장학금, 강사수당을 받는 것을 허용(연구비 고시)

### 5. 연구수행지원의 책임성 강화

#### ① 연구와 행정의 분리를 위한 연구지원역량 강화

- **(연구지원 책임 명확화)** 연구자는 연구수행에 전념하고, 연구기관은 연구수행 전념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원칙을 명문화

- ('19년) 연구기관의 연구지원 책임을 명시(공동관리규정)
- ('21년) 연구기관의 연구지원 인력 확보 및 조직 구성 책임을 명시(혁신법)



- **(연구지원 강화 유도)** 연구기관이 연구지원 역량을 강화하도록 연구지원기준과 관련된 지표를 고도화하고 이행력 강화

- (19년) 기존 사전통제·감독 위주의 '연구비관리체계 평가'를 연구행정의 질적 수준을 진단하는 '연구활동 지원역량 평가'로 개편(추진계획 공고)
- (21년) 연구지원을 위한 연구지원체계의 일반기준인 「연구지원기준」을 과기정통부 고시로 정하여 연구지원에 관한 공식적인 원칙 확립(혁신법)

- **(연구자 밀착지원 강화)** 연구근접지원인력의 활동에 관한 직접비 집행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

- (19년) 학과, 연구실 등에서 행정인력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직접비에서 행정인력인건비 계상을 허용하고 간접비의 사용 제한 요건\* 폐지(공동관리규정)  
\* 연구비 규모가 10억원 이상이고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에만 지원
- (21년) 연구행정인력의 출장 등 활동에 연구활동비 집행 허용(혁신법)

## 2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강화

- **(참여제한 기간 확대)** 부정행위 발생 시 참여제한 기간의 상한을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('21년~)  
※ 참여제한 시효(10년) 및 연구수행 중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금지 제도 신설
- **(위반사실 공개)** 5년 이상 참여제한 또는 연구비의 3배 이상의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경우 위반사실을 NTIS를 통해 공개('21년~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 
성과평가정책국 연구제도혁신과

담당자	정재현 사무관
연락처	전 화 : 044-202-6954 E-mail : jaeheoun.jung@korea.kr